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학교전담경찰관의 인식*

이 창 배**

〈요 약〉

학교폭력이 심각해짐에 따라 학교차원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하였지만, 이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교사의 입장에서 자치위원회를 바라보는 인식들을 주로 조사하였고, 자치위원회의 주요 구성원 중 한 명인 학교전담경찰관이 느끼는 인식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대상으로 자치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만족도, 인적구성의 적합성,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학교장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하였다. 연구의 참여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포함하는 4개 지방경찰청(서울, 경기, 부산, 울산)에 소속된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구성되었고, 자기기입식 방법을 통해 정형화된 문항과 개방형 문항에 대해 응답을 요청하였다. 자료의 분석 결과, 학교전담경찰관들은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구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인식하였고,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참여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외부 위원의 참여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학교장이 학교폭력에 대해 보다 엄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위원회 참여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가 제시되었다.

주제어 : 학교전담경찰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만족도, 학교장 인식, 설문

* 이 논문은 2015년 울산대학교 교내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울산대학교 경찰학과 부교수

목 차

- | |
|---|
| I. 서 론
II. 논의의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논의 및 결어 |
|---|

I. 서 론

학교폭력의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한국 교육의 현실이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전국 초·중·고교, 특수 및 각종 학교의 학교폭력 자치위원회가 심의한 학교폭력 건수는 2013년에 다소 감소하는 듯 했으나, 2014년 상반기의 경우 전년 상반기보다 약 1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15).

정부차원에서 시도되었던 학교폭력에 대한 정책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1995년에 발표된 ‘학교폭력근절대책’, 2004년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시행, 2005년의 ‘제1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2010년의 ‘제2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2012년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등으로 그간 범정부적 관심과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경찰청 또한 처벌 위주보다는 사전에 위험요소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기 위해 경찰과 피해학생의 멘토/멘티 관계 형성 및 유지와 학교전담경찰관 설치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다(경찰청, 2012).

정부와 경찰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3년 잠시 주춤했던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다시 증가하는 현상은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보다 학교

폭력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이순래, 2002). 호주 New South Wales 주의 교육부 정책과 한국의 교육정책을 비교한 한 연구에 의하면, 호주의 제도는 다원적인 접근방식으로 학생을 중심에 두고 인성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의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학교폭력 대응 정책의 접근법은 교사의 입장에서 예방보다는 가해자의 처벌과 사후 교정교육에 치중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김장대, 2008).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의 대책 중에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가 그 설립 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분석한 선행연구는 그리 많지 않고, 그 또한 대부분이 교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이었으며, 학교폭력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구성원인 학교전담경찰관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내의 기구로서 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충실히 수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학교전담경찰관의 인식을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자치위원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논의의 배경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차원에서의 체계적인 대응의 일환으로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의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그 주요한 기능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해학생의 선도과 징계를 위해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6조, 제17조).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기능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분쟁조정 기능이 있으나 실제 사례에서는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의 갈등을 조정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 그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가해학생의 조치를 학생부에 기록하게 되어 있어 학생을 선도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오히려 학생에게 또 다른 형태의 징벌이라는 지적이 있다(박주형 외, 2013). 피해학생은 더욱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가해학생은 보다 방어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하고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결과가 종종 발생한다(한유경 외, 2013). 김주현(2013)은 가해학생에게 부여된 조치를 학생이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이에 대해 적절한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제시하였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한 김정남(2013)의 연구에서는 초등교사들이 학교폭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낮은 것으로 발견되었고, 사후적 대응보다는 사전적 예방을 위해서 상담 시간의 확보를 원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장가람(2013)은 교사들이 학교폭력의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꺼려하고,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으로 나누어 이분법적인 대응을 적용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자치위원회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영국의 경우처럼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의 학부모에게 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학부모 소환제를 통해 그 책임을 공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이성순, 외 2012). 또한, 자치위원회와 다소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선도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위원회의 교내봉사나 관련 프로그램이 교육적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 응답자가 그렇다고 생각한 응답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적 효과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징계가 다소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학생의 관리 감독이 어려움을 주요한 이유로 선택하였다(김광민, 2013).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위원회의 구성에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자치위원회에 포함할 수 있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되

는 경우는 학부모 위원이 과반수이고, 그 외 교감, 생활지도 담당교사, 학교전담경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장미현, 201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제14조).

1. 해당 학교의 교감
2.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학부모대표
4. 판사·검사·변호사
5.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비교육전문가인 학부모 대표들이 과반수 포함되어 있고, 그들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다소 존재한다(김난주, 2013). 또한 직·간접적으로 학교폭력에 영향을 주고 혹은 받고 있는 교사들은 사안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학부모 위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지만, 전문성이 부족하여 오히려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성이 주장된다(한유경 외, 2013).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현실화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에 사법기관이나 사법관련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분쟁조정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이승현, 2012). 예를 들어, 통상적으로 자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 이외에 보호관찰관 등의 사법전문 인력을 구성인원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안혁근 외, 2013).

그 외에도 자치위원회의 구성에 전문 사회복지사를 포함하여 분쟁의 조정에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고, 또한 위원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상담 기능의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김종훈, 2007). 사회복지사를 자치위원회에 포함시킨다면 학교폭력문제의 대처에 부족한 학교의 자원을 보충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서비스와 자원을 활용하는 데 기능을 할 수 있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자와 조정자의 역할로 학교폭력을 다각도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권문일, 2012).

자치위원회의 구성이나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가 다소 발표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이에 대한 선행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고, 또한 대부분이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다. 자치위원회가 단순히 가해학생의 선도와 징계만을 위해서 설치된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의 보호와 분쟁 조정, 학교폭력 예방의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전담 경찰관의 인식을 조사하여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한 연구가 매우 절실하다.

2. 학교전담경찰관

학교전담경찰관은 1960년대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 경찰국에서 최초로 실시하였고, 1990년대 이후 지역사회 경찰이 활성화되면서 급속도로 미국 전역에서 퍼져나갔다. 정확한 인원수를 측정하는 것은 힘들지만, 1997년 미국의 학교폭력방지센터(Center for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에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학교전담경찰관들이 한 학교에 전담 배치되어 있으며, 초·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에 보다 많은 수의 경찰관들이 배치되어 있었다(Center for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2012). 미국 정부의 한 연구기관에서 시행한 설문에 의하면, 응답한 학교 직원의 90% 이상이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에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고, 프로그램을 위한 재정적 지원 또한 계속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Crime Prevention Center, 2000).

국내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과 유사한 배움터지킴이(전국 초·중·고교 8,560명 배치,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와 아동안전지킴이(보건복지부 주관), 학교보안관(서울시 국·공립 초등학교 1,102명 배치) 등의 제도가 시행되어 왔으나 대부분 자원봉사자나 전직 경찰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날로 흉폭화 되어 가는 학교폭력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2012년 2월 경찰청은 지구대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학교전담경찰관 306명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해 6월에 514명으로 증원하고 학교전담경찰관 발대식을 개최하였다(안혁근 외, 2013). 학교전담경찰관의 주요 업무의 범위는 범죄예방활동, 학교폭력의 신고 접수 및 처리,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 경·학 협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경찰청은 매년 학교전담경찰관의 인력을 보강하고 있고, 2014년부터 아동·청소년·교육·심리·상담학을 전공한 인력을 특별채용을 통해 학교전담경찰관으로 선발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의지를 피력하였

다.

경찰청이 전문적인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시행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인지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선행연구는 그리 많지 않고, 몇몇의 연구가 제도의 운영 효율성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대부분이다(김양지, 2014; 신승민, 2015; 안혁근 외, 2013; 최종술, 2014). 학교전담경찰관의 인식조사에 대한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하고, 특히 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설문조사가 거의 수행된 적이 없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학교전담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여 자치위원회가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학교전담경찰관 중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포함한 4개의 지방경찰청(서울, 경기, 부산, 울산)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경찰관으로서 목적표집방식에 의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설문을 병행하였다. 조사는 2015년 6월 한 달 동안 진행되었고, 그 기간에 직무교육을 개최한 지방경찰청은 교육 과정 중에 설문지를 배부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기간에 교육이 계획되어 있지 않은 지방경찰청의 경우에는 소속되어 있는 학교전담경찰관 개인에게 온라인으로 설문지를 배부하고 6월 말까지 응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설문지에 포함된 문항들은 대부분 정형화된 형식의 질문들이지만, 응답자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자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개방형 문항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 총 168개의 설문이 회수되었고, 그 중에서 응답이 불성실한 4부를 제외하고 164개의 설문은 자료의 분석에 활용되었다.

2. 주요 변수의 측정

연구의 주요한 대상변수는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기구로서 그 기능

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학교전담경찰관이 느끼는 인식이다. 자치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학교폭력의 예방, 피해자의 구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쟁 조정, 가해자의 선도 등 4개의 기능을 위원회가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 4 = 매우 그렇다)를 활용한 문항으로 인식을 측정하였다. 자치위원회 인적 구성의 적합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리커트 척도를 활용한 7개의 문항으로 전담경찰관의 인식을 측정하였다. 인적 구성에 대한 질문은 교감의 참여, 생활지도 교사의 참여, 담임교사의 참여 배제, 학부모 대표의 참여, 인원 제한(5인 이상 10인 이하), 학부모 대표의 과반수 위촉, 판·검사·의사 등 외부 인사의 효율적 참여에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인적구성에 대한 문항은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을 설문한 장미현(2014)의 연구를 참고하여 적절하게 수정하였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학교장의 대응에 대해 학교전담경찰관이 느끼는 인식에 대해서도 설문하였다. 학교전담경찰관은 주로 학교에서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기에 학교를 대표하는 교장이 학교폭력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것은 중요하다.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태도, 안전에 대한 관심도, 학교 문제에 대한 대응에 관련하여 May and Chen(2009)의 연구를 참고하여 7개의 리커트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그 외 통제변수로 성별, 경찰재직경력(년), 학교전담경찰관 근무경력(개월), 근무지역(수도권/비수도권) 등을 포함하였다.

3. 분석 방법

자료는 자치위원회의 기능, 인적구성의 적합성, 학교장의 대응에 대한 학교전담경찰관의 인식을 기술통계 위주로 분석하여 제시하고, 학교장의 대응과 인적구성에 관련한 인식이 자치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인식에 연관이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다변량 분석인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통계프로그램은 SPSS 21.0이다.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에 참가한 학교전담경찰관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서 제시되었다.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은 남성이 차지하였고, 비수도권(부산, 울산)보다는 수도권(서울,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빈도(명)	%	계
성별	남	128	78.0	164
	여	36	22.0	
지역	수도권	107	65.2	164
	비수도권	57	34.8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경찰재직(년)	11.4	7.12	1	36
전담경찰근무(개월)	17.36	13.68	1	90

경기에 소속된 경찰관들이 더 많이 참여하였다. 설문 참가자들은 평균적으로 약 11년 이상을 경찰관으로 재직하였고, 최대 36년을 근무한 경찰관도 포함되었다.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근무한 경력은 평균 1년 반(17개월) 정도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가 정식으로 발족된 것이 2012년으로 역사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IV. 연구결과

학교전담경찰관들이 자치위원회가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 느끼는 인식을 설문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었다. 학교폭력의 예방, 분쟁조정, 피해학생의 구제, 가해학생의 선도 등에 대해서 적절히 그 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전담경찰관들이 평균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것은 피해학생의 구제에 대한 문항이었다. 다른 문항에 비해 비교적 큰 차이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피해학생에

〈표 2〉 자치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인식

기능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학교폭력 예방	2.59	0.62	1	4
분쟁조정 기능	2.56	0.64	1	4
피해학생 구제	2.41	0.64	1	4
가해학생 선도	2.54	0.63	1	4

대한 보호와 구제에 대해서 자치위원회가 그 기능을 다소 미흡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형사정책이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구제보다는 가해자의 처벌에 다소 집중되어 있었던 양상과 비슷한 형태로 보인다.

이에 반해, 학교폭력의 예방, 분쟁조정, 가해학생의 선도 등에 관련한 기능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2)는 응답보다 그렇다(3)의 응답이 미미한 차이로 우세하였다. 전반적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이 바라보는 자치위원회는 그 효용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경찰관들이 자치위원회의 인적구성의 적절성에 대해서 느끼는 인식을 살펴보겠다.

자치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관련한 7가지 문항에 대해서 학교전담경찰관의 응답은 항목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준 것은 생활지도의 경험이 있는 교사의 참여(M = 3.24)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자치위원회의 구성원을 5인 이상 10명 이하로 제한(M = 3.01)한 것에 대해서 높은 만족도를 보여 주었다. 학교전담경찰관들이 학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수행하고, 특히 자치위원회에 참여하면서 학생들의 생활지도 경험이 있는 교사의 의견이나 도움이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한 문항은 학부모 대표의 참여(M = 2.94)와 교감의 참여(M = 2.91)로 나타났다. 전담경찰관들은 자치위원회의 심의와 결정 과정에 있어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학부모 과반수의 참여에 대해서는 다소 낮은 점수로 응답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학부모가 전체 회의의 분위기나 결정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표 3〉 자치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대한 인식

인적 구성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교감의 참여	2.91	0.57	1	4
생활지도교사 참여	3.24	0.51	2	4
담임교사 배제	2.29	0.77	1	4
학부모 대표 참여	2.94	0.66	1	4
학부모 과반수 참여	2.65	0.75	1	4
구성원 수 제한	3.01	0.41	2	4
외부인사의 참여	2.38	0.83	1	4

부정적인 의견도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부모의 참여와 함께 학교를 대표하는 교감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학교폭력의 대응에 있어 학교의 대표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하지만, 비교적 불만족스럽게 느끼는 문항도 다소 발견되었다. 가장 낮은 점수는 담임교사의 참여를 배제(M = 2.29)하는 것이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교감, 생활지도 교사, 학부모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담임교사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응답자의 대부분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외부인사의 참여(M = 2.38)에 대해서도 대체로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응답하였다.

학교전담경찰관이 느끼는 학교장의 대응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경찰관은 학교장이 학생들의 안전에 관심이 있다는 점에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학교폭력의 대응에 있어 학교 측의 태도가 중요하고, 학교를 대표하는 학교장이 학생의 안전에 관심이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전담경찰관들은 학교장이 교사의 안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학교장이 전담경찰관의 방문에 대해서 비교적 환영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전담경찰관의 업무에 대해서도 협조적인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학교전담경찰관들은 학교장이 학교폭력, 폭력써클, 교칙위반 등 학교에 관련한 제반 문제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응하는가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다. 이러한 결과를 정리하면,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장이 학생의 안전에 관심이 높고,

〈표 4〉 학교장의 대응에 대한 인식

교장의 대응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전담경찰관의 방문을 환영한다	2.90	0.67	1	4
전담경찰관에게 협조적이다	2.93	0.62	1	4
학생의 안전에 관심 있다	3.12	0.58	1	4
교사의 안전에 관심 있다	2.89	0.61	1	4
학교폭력에 엄중 대응 한다	2.69	0.73	1	4
폭력써클에 엄중 대응 한다	2.83	0.79	1	4
교칙위반에 엄중 대응 한다	2.73	0.67	1	4

〈표 5〉 자치위원회 기능 인식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B	S.E.
남성	0.11	0.36
경찰재직경력	0.31	0.01
전담경찰관경력(log)	-0.49	0.46
수도권	-0.72	0.63
자치위 인적구성(sq)	1.63***	0.35
학교장 인식	.027***	0.40
상수	-0.11	1.72
F(df)	9.26(7, 153)***	
R²	0.298	

* $p < 0.05$; ** $p < 0.01$; *** $p < 0.001$ (양측검정)

전담경찰관에 대해서도 협조적이지만, 실제로 학교의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덜 엄중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상으로, 자치위원회의 기능의 충실성과 인적 구성, 그리고 학교장의 대응에 대한 학교전담경찰관의 인식에 대해 알아보았고, 그렇다면, 자치위원회 기능의 충실성에 대한 인식에 자치위원회의 인적 구성의 적절성과 학교장의 대응에 대한 인식이 관련성이 있는지 다변량 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종속변수인 자치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인식을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였기에 다중회귀(multiple regression) 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에 앞서 각 변수가 여러 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문항들 간에 신뢰도를 검토한 후, 각각의 문항들에 대한 응답을 더하여 하나의 변수로 통합하였다(자치위원회의 기능 Cronbach's $\alpha = 0.783$, 자치위원회의 인적 구성 Cronbach's $\alpha = 0.757$, 교장의 대응에 대한 인식 Cronbach's $\alpha = 0.883$).¹⁾

<표 5>에서 제시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학교전담경찰관이 인식하는 자치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대한 만족도와 학교장의 대응에 대한 인식은 자치위원회

1) 변수의 통합에 앞서, 변수에 포함될 항목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하나의 요인에 대하여 요인적재량이 0.70 이상을 보여주었다. 다중회귀분석은 각 변수의 분포도가 정규성을 벗어난 경우 모형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전담경찰관 근무기간과 인적 구성의 분포도가 부적합하여 이를 교정할 수 있는 자료 변형방식(log와 square root)을 각각 적용하였다. 그 외 다중공선성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Tolerance 지표와 VIF 지수가 각각 0.1보다 작거나 10보다 큰 변수가 발견되지 않아 문제점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기능의 충실성에 대한 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다. 학교전담경찰관이 자치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할수록 자치위원회가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학교장이 대응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잘 수행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에 반해 학교전담경찰관의 인구사회학적 통제변수들은 모두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어

이 연구는 2004년 시행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학교폭력의 예방과 효과적 대응을 위해 학교별로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그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을 학교전담경찰관을 상대로 설문하였다. 설문의 내용에는 자치위원회의 인적 구성의 적합성과 학교장이 학교폭력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한 인식도 함께 포함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학교전담경찰관들은 자치위원회가 기능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지만, 그 수준이 자치위원회의 인적 구성이나 교장의 대응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위원회의 설치 목적인 학교폭력의 예방, 분쟁조정, 피해학생의 구제, 가해학생의 선도 등의 기능에 있어 자치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 설문한 결과 폭력의 예방, 분쟁 조정, 가해학생의 선도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었지만, 피해학생의 보호나 구제의 측면에서는 만족도가 낮았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 학교전담경찰관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위원회의 주요 구성원인 교감, 생활지도 교사, 학부모 대표들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분쟁의 조정이나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혹은 선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면서, 정작 피해를 당한 학생의 보호나 구제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김장대, 2008). 형사정책이 과거에는 범죄자의 처벌에 중점을 두었지만, 근래에는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구제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인데,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자치위원회에서는 아직 이 단계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개방형 질문에 한 경찰관이 제시한 의견으로 진술 내용을 보면, 위원들이 다른 목적보다는 징계

에 보다 무게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원들은 학교폭력에 대한 인지력이 많이 부족한 편이다. 특히 학부모들의 법률의 의한 원칙적인 처리보다는 감정적으로 처리하려는 면이 있으며, 특히, 자치위원회가 학생들의 선도 및 분쟁을 해결해 주는 역할에 대하여 잘 못 이해하고 징계를 내리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 학생들을 위한 자치위원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둘째, 학교전담경찰관들이 자치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교감과 생활지도 교사,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었지만, 학부모의 과반수 참석, 담임교사의 배제, 외부인사 참여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 학교폭력의 대응에 있어 학교의 대표와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었지만, 학부모 대표가 과반수를 구성하도록 규정한 점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았다. 학교폭력의 처리나 대응에 있어서 전문성이 다소 부족한 학부모 대표가 과반수를 차지하여 회의의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선행 연구의 내용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으로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전담경찰관도 비교육전문가인 학부모 대표들이 과반수가 포함되어야 하는 규정에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김난주, 2013).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한유경 외, 2013), 이 연구에 참여한 학교전담경찰관들은 외부위원의 참여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외부 인사로서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자치위원회는 교감, 교사, 학부모,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담경찰관들은 불만족스럽게 느끼고 있었다. 보호관찰관(안혁근 외, 2013), 사회복지사(김종훈, 2007) 등 학교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들이 자치위원회에 참여하여 그들의 전문성을 통해 위원회의 효용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인적구성의 적절성에 관련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이 개방형 응답에 제시한 내용 중 몇 가지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규정상 위원회 구성을 학부모들을 50%이상 구성하도록 되어있어 학부모 위원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으나 대부분 가정주부들로서 학폭법에 대한 법률지식 등이 전혀 없어 위원회의 운영이 힘들 정도이다. 학폭위가 법률에 규정된 의결기구임에도 학폭위의 개념조차도 모르고 참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법률의 숙지가 잘 되지 않는 학교위원인 선생님과 학부모가 참여하게 됨에 따라 위원으로써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담당경찰관으로서도 자치위원회의에 관한 법률 숙지 및 사례 공유가 필요하지만,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 되고 교육의 주기가 너무 길어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또한 경찰위원은 외부위원으로 치부되어 학교에서 학부모 위원과 다르게 생각하고 판단하여 대우하는 것 같다. 10명의 위원 중 한 사람이라는 것이 법적 해석이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학교 관계자 연수가 필요하다. 또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와의 운영에 대해 이해도가 차이가 나기에 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자치위원회의가 교감을 포함한 교사, 학부모, 담당 학교전담경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형편으로 가해자 선도처벌,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 현실적으로 학교전담경찰관에게만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며, 학교에서 사안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사법권 등이 전혀 없고 경험 및 교육의 부재로 사안조사가 부실하게 되어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 또한 학부모들은 객관적이기 보다는 감성적으로 사안을 대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이 결여 되어 있다.

셋째, 학교장의 대응에 대한 학교전담경찰관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학교장이 학생들의 안전에 관심이 있고,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해서 협조적인 것으로 느끼고 있었지만, 학교폭력, 폭력씨클, 교칙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교 측에서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았다. 학교장의 입장에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비롯해서 다양한 자원을 보유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학교폭력 문제를 공론화하고, 학생들의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처벌을 부과하는 데는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김주현, 2013; 김정남, 2013: 장가람, 2013). 아래 개방형 응답에서 알 수 있듯이 처벌에 대한 강제조항이 미흡한 점도 학교측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학폭위 의결에 대한 강제 조항이 없어 가해자 측에서 이행치 않을 경우 학교가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게 되고 피해자는 재심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학폭위 내부적으로 해결할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예) 학교폭력에 대한 법률로 학폭위 징계결정을 이행치 않을 경우 강제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학교전담경찰관들은 자치위원회가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학교장이 학교폭력에 대해 보다 엄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자치위원회 인적 구성을 보완하여 위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 대표의 과반수 참석 조항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의 해결을 위해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과반수의 참석으로 인해 자치위원회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가 과반수로 참여하는 것보다는 학교 측, 학부모, 외부인사의 참여를 균등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외부인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등 위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교사, 학부모, 외부 인사 등 참여 위원들의 전문성의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체계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개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치위원회의 징계결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강제 조항을 규정에 추가해야 한다.

이 연구는 학교전담경찰관이 자치위원회의 운영과 인적구성 등에 대해 느끼는 인식을 조사하여 위원회의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연구자가 목적표집 방식을 통해 학교전담경찰관을 수도권 지역과 부산/울산 지역에서 설문 수행하였기에 응답자의 대표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점을 보완하여 전국에서 근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대표하는 표본을 상대로 조사를 수행한다면 연구 결과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경찰청. (2012). 학교폭력 근절대책 종합 추진현황. 내부자료.
- 교육부. (2015). 2015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교육부
- 김광민. (2013). 중등학교 학생선도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김난주. (2013).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연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 김양지. (2014). 학교전담경찰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비폭력대화 기법의 도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 김장대. (2008). 호주 NSW 주와 한국 경기도의 학교폭력예방정책의 비교연구, 「아태연구」, 15(2): 269-293.
- 김정남. (2013).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초등교사의 역량과 대책의 효과성 분석.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 김종훈. (2007). 학교사회복지사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역할비교. 석사학위논문.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 김주현. (2013). 학교폭력의 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광주여자대학교.
- 김태진. (2007).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상,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3: 169-192.
- 권문일. (201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 「보호관찰」, 12(1): 1-31.
- 박윤기. (2008).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 박주형 외. (2013). 학교폭력 사안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관한 법적 쟁점 분석. 「교육법학연구」, 25: 129-150.
- 박찬걸. (2010). 학교폭력대책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소년보호연구」, 15: 91-130.
- 신소라·조윤오. (2013). 학교 내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국 공립학교의 경비활동 유형을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지」, 37: 137-163.
- 신승민. (2015).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영산대학교.
- 안혁근 외. (2013).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모델 개발. 한국행정연구원.
- 원혜옥. (200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7: 113-135.

- 오승환. (2007). 청소년의 집단괴롭힘 관련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분석,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5: 74-98.
- 이상훈. (2011). 서울시 학교보안관 제도의 평가와 발전적 확대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9: 165-191.
- 이성순 외. (201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현실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안전학회지」, 8(2): 9-40.
- 이순래. (2002). 학교폭력의 원인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승현. (201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 및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23(2): 157-190.
- 이웅희. (2006). 학교폭력행위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공인행정학회보」, 25: 245-265.
- 장기람. (2012). 학교폭력 현상 및 정책에 관한 교원들의 인식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장미현. (201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분석.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 정의롬. (2014).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민간경비의 활용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39: 387-411.
- 최중술. (2014). 학교경찰의 한국적 모형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9: 205-230.
- 한유경 외. (2013). 학교폭력 대책 강화에 따른 단위학교 사안 처리과정에서의 갈등 분석, 「교육과학연구」, 44: 73-97.
- 황석규 (2006).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요인분석 연구: 서귀포시 초중고 학생을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29: 253-281.

2. 외국문헌

- Center for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North Carolina Department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http://www.ncdjdp.org>)
-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Crime Prevention Center. (2000). 「School resource officer programs」 Richmond, VA: Author.
- May, D.C., & Chen, Y. (2009). School Resource Officers in Kentucky: Who are they and what do they do? Kentucky Center for School Safety.

【Abstract】

School Resource Officers' Perception toward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Local Board against School Violence

Lee, Chang-Bae

As school violence gets serious, the school system created the local board against school violence in order to respond to school violence effectively. Yet, there are not many studie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local board against school violence. A few studies investigated teachers' perception about the local board while the information about the school resource officers' perception is not known much. The current study surveyed school resource officers about their perception towards the function of the local board, its member, and the response of the principal to school violence. Participants are the school resource officers working for the four metropolitan police agencies(Seoul, Kyunggi, Busan, and Ulsan) in Korea, and were asked to answer to structured and open-ended question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officers thought the local board did not very well for the function of protecting the victim's rights. In addition, they believed that the participation of parents needs to be limited in the membership, and more experts should be included in the membership of the local board. They also thought the principals should be tough in dealing with school violence. The discussion includes ideas about improving professionalism of the membership and making changes on the related regulations.

Key words : school resource officers, local board against school violence, satisfaction, perception about principal, survey